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도입과 현황

-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손 태 우*

目 次

- | | |
|----------------|--------------------|
| I. 서 설 | Ⅲ. 비무슬림 국가의 이슬람 금융 |
| Ⅱ. 이슬람 금융의 일반론 | 1. 개설 |
| 1. 이슬람 금융의 의의 |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
| 2. 이슬람 금융기법 |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
| | Ⅳ. 결 론 |

I. 서 설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 Sharia-compliant finance)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른바 서구식 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샤리아(Sharia), 즉 이슬람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금융을 말한다. 이슬람 금융이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된 계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당시 과도한 레버리지, 불투명한 파생상품, 부채 중심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서구 금융시스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반면, 이슬람 금융은 과도한 부채투기와 불투명한 구조화 상품을 제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국제금융으로 부각되었다. 국제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국가들은 안정적인

■ 투고일자 : 2025년 11월 19일, 심사일자 : 2025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12월 15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기법을 추구하고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하는 중 이슬람 금융의 탁월한 안정성과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 크게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의 최근 현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이슬람 금융자산은 두자리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며, 팬데믹 기간 이후인 2021년 기준으로 두자리 성장세를 유지해 오다가 2022년 기준으로 6퍼센트 성장세로 다소 약화되고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슬람 금융은 자산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은행(이슬람 은행)·자본시장(수쿠크)·보험(타카풀) 등 전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이슬람 금융서비스 산업의 총자산은 3.88조 달러로 전년 대비 14.9% 성장하였다. 부문별로는 이슬람 은행이 전년 대비 17.05%, 타카풀이 16.9%, 수쿠크 발행이 25.6%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 금융은 세계 19억 무슬림 뿐만 아니라 비무슬림도 포함한 60개 이상 국가의 360여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 금융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14개 이상의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관리하고 있다.²⁾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국가, 즉 이슬람교가 국교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적 권위를 가진 국가에서 운영되는 금융이지만, 비이슬람 국가 중에도 해당 국가 내에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거나, 상당수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이른바 이슬람 법권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전형적인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이슬람 금융이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슬람 금융은 국제적 대안금융을 넘어 명실상부한 국제적 금융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보듯이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 같은 비이슬람 국가도 이슬람 금융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영국과 일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인지와 그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을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이슬람 금융을 국외에 한정해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에서도 이슬람 금융이 운영될 수 있는 정책과 법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기초 지식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문 목적을 위해 먼저 이슬람 금융의 일반론을 간략하게 살핀 다음

1)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global-islamic-finance-report-2019>(검색일2020.9.20.); <https://ceif.iba.edu.pk/pdf/islamic-financial-services-industry-stability-report-2023.pdf>(검색일2024.9.26.).

2) Ghiath Shabsigh et al.,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in Countries with Islamic Banking, IMF Country Report No. 17/145, 2017.1.5., p.1.

에 영국과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도입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II. 이슬람 금융의 일반론

1. 이슬람 금융의 의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이자(Riba 리바)를 주된 요소로 보는 서구식 금융과 달리 이자 없이 운용되는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으로 본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는 금융이므로 샤리아의 주된 법원(法源)인 꾸란과 순나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자 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슬람 금융 역시 서구 금융처럼 이윤획득과 자본증대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과 같은 여러 가지 이슬람 금융상품을 개발·이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상품이 모기지 금융으로 활용되는 사례처럼 금융상품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구 투자은행도 이슬람 금융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슬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은행창구를 설치해 이슬람 금융을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샤리아가 처한 시대와 경제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재해석되고 있고, 이슬람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상품이 혁신적으로 발전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의 세계화와는 달리 그것의 역사는 상당히 짧은 편이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가 근대화에 맞추어 서구식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이자를 금지하는 샤리아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1940년대부터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샤리아 준수 금융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이론적 이슬람 금융은 1975년 이슬람 국가 간에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Jeddah)이 설립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1975년 두바이 이슬람 은행(Dubai Islamic Bank)이 여러 국가의 무슬림 사업가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사금융에 해당되는 이슬람 은행의 시작이었다.³⁾ 이처럼 두바이 이슬람 은행이 설립된 후 10년 만에 50개 이상의

3) A.L.M. Adbul Gafoor, Interest-free commercial banking, A.S. Noordeen, 2010, p.39. 일부 학자는 이슬람 은행은 1971년 이집트의 나지르사회은행(The Nasir Social Bank)이라는 무이자상업은행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동 은행의 정관에는 이슬람 또는 샤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당시 이집트가 서방국가로부터 이슬람 원리주의국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였고, 동 은행은 이자를 취득하거나 지불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교역 및 산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예금자들에게 배분한 것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은 한다. Fatima Akaddaf,

이슬람 은행이 설립되었고, 그 은행들 중 일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및 스위스와 같은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설립되었다. 특히 비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을 가장 발달시킨 국가인 영국은 이슬람 금융 발전을 저해하는 세제와 불이익을 제거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였고, 2004년 '영국 이슬람은행(Islamic Bank of Britain)'을 설립하였다. 동 은행은 처음으로 서구 상업은행에 대비되는 이슬람 은행이었다. 이후 영국은 여러 이슬람 은행을 두고 있다.⁴⁾

오늘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서구식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샤리아를 준수하는 이슬람 은행을 병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자를 본질적 운영수단으로 사용하는 서구식 은행이 이슬람 국가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배타시 하는 샤리아 원칙에 따라 해당 이슬람 국가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서구 은행이 이슬람 국가에서 경영하기 위해서는 샤리아 원칙에 따라 무이자로 경영해야 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이윤 혹은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물론 비무슬림 고객에는 종래 서구 은행처럼 이자를 수단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 수단 및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 국가는 서구 은행과 이자를 매개로 하는 금융시스템이 샤리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하여 해당 국가의 전체 금융시스템을 이슬람 금융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⁵⁾

2. 이슬람 금융기법

(1) 개설

이슬람은 이자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의 창출은 허용한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대신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허용하여 종래의 서구식 금융기법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이슬람 금융기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무다라바(Mudaraba), 무샤라카(Musharaka), 무라바하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o Arab Islamic Countries: Is the CISG Compatible with Islamic Law Principles?", 13 Pace Int'l L. Rev. 1, 50 (2001).

4) http://www.mohammedamin.com/Islamic_finance/Euromoney-chapter-UK-international-centre-for-Islamic-finance.html(검색일2025.10.11.).

5) <http://https://islamic-banking.com/islamic-financial-system/>(검색일2025.4.2.); 배상욱, 중동의 은행산업 현황 및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4.8, 31면

(Murabaha), 이자라(Ijarah) 등을 들 수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보고서는 이슬람 금융기법을 크게 지분 계약(Equity instruments)과 대부 계약(Debt instruments)으로 구분하고 있다.⁶⁾ 그 밖에도 재화거래 계약, 자본조달 계약 및 금융중개 계약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⁷⁾ 이하에서는 UN 경제사회이사회 분류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기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분 계약

1) 무다라바(Mudaraba)

무다라바는 이슬람 은행에서 많이 이용되는 금융기법 중의 하나로, 복수의 당사자 중에 한 당사자가 자본을 제공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를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각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⁸⁾

무다라바는 2단계의 계약 체결로 이루어진다.⁹⁾ 첫 번째 단계는 은행과 예금자 간의 계약으로서 예금자는 은행에 예탁하면서 예탁금 운용에 따른 사업 이익을 공유할 것을 합의한다. 이때 예금자는 특정 사업을 명시하고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와 사업 내용을 은행에 일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예금자는 자금 제공자(라발말: Rabbalmaal)이며, 은행은 자금 운영자(무다리브: Mudarib)로서 기능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은행과 기업 간의 계약으로, 기업은 은행 자금을 기반을 둔 사업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을 미리 정해진 비율로 은행과 공유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만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구한다. 이 경우, 은행은 자금 제공자로서 기능하고 기업은 자금 운영자로서 기능한다. 이때, 하나의 사업에 대해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은행이 1단계와 2단계 계약에서 저축의 기능과 대출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은행은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위탁 사업 운영이 실패했

6)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reatment of Islamic financial instru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C.18/2006/9, p.3.

7) 강대창,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룩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2-02, 2012, 30-31면.

8) Hussain G. Rammal, "Mudaraba in Islamic finance: principles and application", Feature Edition. Vol. 2013 Issue 2, 2013, p.101; Jamshed Y. Uppal, "Risk and Return of Mudarabas: Empirical Evidence from Pakistan",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41 no.4/5, 1999, p.564.

9) Brian Kettell, Islamic Banking and Finance Workbook: Step-by-Step Exercises to Help You Master the Fundamentals of Islamic Banking and Finance, John Wiley & Sons, 2011, p.51.

을 때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¹⁰⁾

2) 무샤라카(Musharaka)

무샤라카는 복수 당사자 간 영리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행위에 종사하는 공동투자 파트너십의 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합자회사(partnership)'로 번역된다.¹¹⁾ 무샤라카의 자금조달 방식은 이슬람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투자 운영자금을 출연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공동투자 사업을 운영하여 회계연도 말에 산출된 순이익을 각자 투자한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다.¹²⁾ 무샤라카는 기한 혹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그 기간이 정해지고, 공동투자자는 출자금 제공과 더불어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동투자자는 자신의 출자금 출연비율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투자자는 출연한 자금 비율에 따라 손실도 부담한다. 이 점에서 무샤라카가 무다라바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공동투자자는 공동사업 기간 및 이익분배와 손실부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샤라카 계약을 체결한다.

(3) 대부 계약

1) 무라바하

일반적인 무라바하는 이슬람 은행이 부동산 혹은 물품 등 목적물을 구매하고, 고객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사전 약정 없이도 일정 수수료를 덧붙여 그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이다.¹³⁾ 다른 유형의 무라바하는 은행이 고객이 지정하는 목적물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고객에게 일정 수수료를 덧붙여 판매하는 계약으로, 은행이 거래에서 중간매개자를 한다고 하여 '구매주문자를 위한 무라바하'라고 한다.¹⁴⁾ "원가 가산 금융(cost-plus

10) Brian Kettell, 앞의 책, p.49.

11) M. Kutlughan Sava Okte, "Fundamentals of Islamic Economy and Finance: Theory and Practice", Electronic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9 no. 31, 2010, p.196; Bilal Khan, "The Value of Islamic Banking in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Review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 29, 2010, p.454; 브라이언 케텔(김두윤, 김민경 역), 꼭 알아야 할 이슬람 금융, 해남, 2014, 54면.

12) 브라이언 케텔, 앞의 책, 58면.

13) Gohar Bilal, "Islamic Finance: Alternative to the Western Model",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23 No.1, 1999, 145면; 최재건·서희열, "이슬람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2011. 9, 279면

financing)” 또는 “상품의 금융 재판매(financing resale of goods)”라고 불리는 무라바하는 소 규모 거래와 단기금융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금융기법이다.¹⁵⁾

무라바하의 기본 구조는 판매자인 은행이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공개하고 이에 일정 이윤을 더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한 신뢰로 고객이 해당 물품의 가격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공개한 가격을 믿고 구매하는 것이다. 물론 무다라바 계약 역시 샤리아에 적합해야 한다. 즉 해당 물품은 은행과 고객과의 매매 시점에 존재해야 하며, 매매 시점에 은행이 소유와 점유 혹은 점유 추정¹⁶⁾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이자라

이자라는 타인으로 하여금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이며, 그 대가란 샤리아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¹⁷⁾ 즉, 이자라는 단순히 임대 계약을 넘어 고용 계약¹⁸⁾도 의미한다. 샤리아에서는 물건의 소유 개념을 소유권과 용익권(用益權)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자라는 임대인(무지르: Mujir)이 자산 또는 장비를 자신의 의뢰인에게 아크드(Aqad: 계약)로 미리 정한 임차료(우즈라: Ujrah)를 임대 기간 내에 임대하는 만파(Manfaah: 용익권) 유형의 계약이다. 이때 임대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남아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고객[임차인: 무스타지르(Mustajir)]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한 이자라 와 이끄티나(Ijarah wa iqtina)가 주택 대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¹⁹⁾

14) 브라이언 케텔, 앞의 책, 30면.

15) S. Farroq, “A Profile Analysis of the Customers of Islamic Banking in Khyber Pakhtunkhwa”, IBA Business Review, vol. 6 No.1, 2011, p.120.

16) 여기서 '점유 추정'의 상태는 소유자인 은행이 물품의 물리적 인도를 받지 않았으나, 그 물품이 그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물품의 파손 위험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이언 케텔, 앞의 책, 36면.

17) 이 정의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OIFI)의 금융회계기준(Financial Account Standard: FAS)에 나와 있다. Brian Kettell, 앞의 책, p.166.

18) 이러한 이자라 유형은 인적 서비스가 타인에 의해 고용된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의사, 변호사, 교사, 회계사, 기타 시장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브라이언 케텔, 앞의 책, 64면.

19) 이자라 문타하 비탐리크(Ijarah Muntahia Bittamleek)로도 알려진 이자라 와 이끄티나는 자산(건물

서구식 임대 혹은 리스는 샤리아상 인정되는 임대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부동산 이용에 따른 임대료 수령은 샤리아에 부합된다. 그러나 주요한 차이점으로 는 이슬람식 임대에서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보험의 책임을 지 는 것이다. 종래의 많은 운용리스(operating lease)에서는 임차인에게 리스 목적물의 운용 관리에 책임을 두었으나, 이슬람 운용리스에서는 임대인이 유지·보수 및 보험의 책임 을 부담한다.²⁰⁾

Ⅲ.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1. 개설

통상적으로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국가를 위시한 이슬람 법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이슬람 법권역은 다수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이슬람 국가를 의미하지만, 비이슬람 국가내에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거나 이슬람 법규범을 수용하는 국가도 이슬람 국가로 포함하는 광의의 이슬람 국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비이슬람 국가는 광의의 이슬람 국가가 아닌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이 대표적인 비무슬림 국가이다. 영국은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의 센서스 2021(Census 2021)에 따르면²¹⁾ 영국내 거주하는 무슬림 거주자는 약 390만명으로 전체 영국 거주자 중 6.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영국 내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영국은 이러한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이슬람 금융에 대해 선도적으로 법체계를 구축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 이슬람 국가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비이슬람 국가로 상정해서 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영국과 달리 일본을 비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 금융 도입 국가로 논하

이나 빌라)이 임차인에게 리스되고,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리스 기간 중 또는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리스 기간 종료시 자산의 소유주가 되는 리스계약의 한 형태이다. 브라이언 케텔, 앞의 책, 66면.

20) 브라이언 케텔, 앞의 책, 75면.

2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ulturalidentity/religion/bulletins/religionenglandandwales/census2021?utm_source=openai(검색일 2025.12.26.).

는 이유는 정책적 이유에서 연유된다. 글로벌화 시대에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EU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슬람 국가에 지점 혹은 자회사 형태로 진출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 외에도 일본 기업은 서구 자본적 기업형태로 진출하지 않고 현지 이슬람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이슬람 자본에 참여하는 투자형태로 동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국내에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영국과 달리 일본은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외 현황과 국내 현황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1) 이슬람 금융 현황

영국 최초의 이슬람 은행인 알 바라카 인터내셔널(Al Baraka International)은 1982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후 무역 금융, 리스, 프로젝트 금융 분야에서 샤리아 준수 금융상품들이 성장하였다.²²⁾ 2000년대 초반, 영국 정부는 자국의 금융서비스 규제를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양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며, 동등한 목적을 가진 이슬람 금융 거래와 전통적 금융 거래가 동등한 세금 부담을 지도록 세금 처리 방식을 변경하였다.²³⁾ 또한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명 이상의 무슬림에게 소매 이슬람 금융서비스 제공이 크게 성장하였다. 2025년 기준으로 영국에는 완전한 샤리아 준수 은행이 5개 있으며, 20개 기관이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수쿠크 시장은 2007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2015년까지 총 510억 달러 규모의 57개 수쿠크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2014년 영국 정부는 국채 수쿠크를 발행한 최초의 서방 정부가 되었으며, 당시 수쿠크는 11배 이상 초과 청약된 것으로 그 인기를 증명해 주었다.²⁴⁾

영국의 이슬람 은행들은 영국에서 영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도매금융을 주력으로

2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806aaeed915d74e622e547/2015047Is_Fin_A5_AW_ENG_WEB.pdf(검색일2025.11.29.).

2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806aaeed915d74e622e547/2015047Is_Fin_A5_AW_ENG_WEB.pdf(검색일2025.11.29.).

24)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806aaeed915d74e622e547/2015047Is_Fin_A5_AW_ENG_WEB.pdf>(검색일2025.11.29.).

하는 영국의 이슬람 투자은행들은 해외 이슬람 금융상품 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영국의 이슬람 은행은 영국 국내에서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소매금융 분야에서는 주로 주택금융을 위한 모기지과 저축예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도매금융 분야에서는 투자은행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²⁵⁾

이처럼 강력한 이슬람 보험(타카풀), 펀드 운용 및 은행 부문을 갖춘 영국은 비즈니스 자문 및 법률 회사들이 맞춤형 이슬람 금융 업무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문직 지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개발해 오고 있다. 2015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영국 수출신용 보증부(UK Export Finance: UKEF)가 에미레이트 항공의 에어버스 A380 항공기 4대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9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수쿠크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였다.²⁶⁾

(2) 이슬람 금융 정책

1) 개설

영국 정부는 자국을 국제 이슬람 금융의 관문으로 확립함으로써 영국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 가지 사항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²⁷⁾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성, 협력, 책무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단일한 감독 체제 안으로 이슬람 금융을 포괄하면서 중립성을 추구한다. 감독과 규제에 있어서 영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이슬람 금융을 우대하지도 않고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규제 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제도를 개정하여 이슬람 금융기관이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이슬람 금융의 종교적 기반과 무관하게 영국 국민들

25) 강대창 · 손성현 · 서영경,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30-32면.

2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806aaeed915d74e622e547/2015047_Is_Fin_A5_AW_ENG_WEB.pdf(검색일2025.11.29.).

27) HM Treasury, The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in the UK: the Government's perspective, 2008, p.13.

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²⁸⁾

2) 이슬람 금융 감독 문제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였던 에드워드 조지(Edward George)는 1995년에 이슬람 재단(Islamic Foundation)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데 있어 유동성 관리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서양 사람들이 이슬람 금융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²⁹⁾ 또한 영국의 금융감독청 초대 의장이었던 하워드 데이비스(Howard Davies)는 2003년 연설에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금융감독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³⁰⁾ 그는 전통적 서구 은행과 달리 위험 공유 원칙에 의해 이슬람 은행의 예금은 주식 지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은행 규제와 합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영국에서는 2000년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 FSMA)의 시행령에 의해 은행은 예금을 수취하는 기관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허가 범위 안의 영업 행위만을 영위할 수 있고 적정 자본 충당 의무를 갖는다.³¹⁾ 그는 이슬람 은행의 예금이 주식 지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규정을 적용하면 이슬람 은행에 요구되는 자본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에 대한 본질적인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슬람 은행이 금융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진정한 은행이라기보다는 펀드 매니저의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슬람 금융상품과 전통적 서구 금융상품의 경제적 효과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근본적인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 규제적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와 펀드 매니저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기관이 기대하는 영업 범위가 FSMA의 규제 범위와 합치하지 않아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³²⁾ 하워드 데이비스는 이런 차

28) 강대창 외, 앞의 책, 41-42면.

29) Michael Ainley · Ali Mashayekhi · Robert Hicks · Arshadur Rahman · Ali Ravalial, Islamic Finance in the UK: Regulation and Challenges,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7.11., 8쪽.

30) Speech by Howard Davies, Chairm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02 March 2003, <<http://www.fsa.gov.uk/pages/Library/Communication/Speeches/2003/sp118.shtml>>(검색일2025.11.21.).

31) Michael Ainley 외, 앞의 책, p.11.

32) Michael Ainley 외, 앞의 책, p.11.

이점에도 불구하고, 은행 감독의 관점에서 이슬람 은행이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준수하고 위험에 대비한 적정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험을 관리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면 은행으로 허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³³⁾ 이후 그의 이런 입장은 이슬람 은행에 대한 FSMA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확립되었다.

3) 이슬람 금융 감독에 대한 기본 입장

영국은 금융감독청(FSA)³⁴⁾에 의해 허가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출신 국가나 전문 서비스 분야, 종교적 원칙과 무관하게 동일한 감독 기준을 적용한다.³⁵⁾ 이는 금융 시장에 불필요한 장애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해 장애를 두지도 않고 특별대우를 하지도 않는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내용에 따라 동등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수쿠크에 대한 감독 방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각각의 수쿠크를 경제적 성질에 따라 접근하고 금융감독 비용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동등하게 감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단일 감독 체계 안으로 이슬람 금융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FSA는 종교적 규제감독기관이 아니므로 샤리아위원회의 샤리아 해석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지 FSA는 금융과 운영의 관점에서 샤리아 위원회가 허가받은 금융기관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사항만을 파악한다. 특히 샤리아위원회의 이슬람 법학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가, 단순히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가를 파악한다.

FSA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기관에서 샤리아 위원들이 자문 기능만을 담당하고 금융기관의 운영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FSA는 샤리아위원회의 지배 구조, 보고 체계, 수수료 구조, 계약 조

33) 참조 Speech by Howard Davies, 위의 자료.

34) 영국 FSA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슬람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수쿠크와 같은 샤리아 준수 금융상품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FSA는 2013년에 해체되었고, 그 기능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와 건전성규제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로 분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리상 이슬람 금융의 감독과 건전성 담당기관으로 계속해서 FSA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5) https://en.wikipedia.org/wiki/Financial_Services_Authority(검색일2025.11.25.).

건 등을 살펴본다.³⁶⁾ 샤리아 위원들은 복잡한 이슬람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샤리아 위원이 자문 기능보다는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기관들은 샤리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량을 갖춘 샤리아 전문가가 여전히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샤리아 위원의 이해 상충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³⁷⁾

4) 이슬람 금융의 도입 과정

(가) 개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의 문제와 조세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감독과 조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나) 금융감독 체계 발전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감독하고자 하는 중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였다.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금융을 대체 금융투자 방식이라고 부르고, 수쿠크를 대체 금융투자 채권이라고 부른다. 이는 영국 정부가 이슬람 금융에 대해 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기존의 금융 체계 안으로 포괄하고자 하는 입장을 반영한다.

2004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FSA에 의해 허가받은 영국 이슬람 은행(Islamic Bank of Britain: IBB)은 무다라바 방식을 기반으로 한 저축예금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예금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FSA의 전통적인 예금 규정에 합치하지 않았다. 이에 폭넓은 토론을 거친 후 FSA는 IBB가 예금자들에게 예금자들이 법적으로 예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예금

36) Michael Ainley 외, 앞의 책, p.13.

37) 강대창 외, 앞의 책, 44-46면.

보호를 거절하고 위험 공유 방식으로 예금을 되돌려 받는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고 예금자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³⁸⁾ 이 방안은 IBF가 FSA의 감독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이슬람 방식에 합치하는 예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6년 금융법에 디클라이닝 무샤라카(Diminishing Musharaka)³⁹⁾ 방식의 자산구매 금융 방식을 규정하였다.⁴⁰⁾ 이로써 자산구매 금융과 관련된 이슬람 금융 방식을 감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이후 이슬람 금융을 적용한 모기지 금융이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이후 2007년에 FSA는 이슬람 방식에 의한 주택 구입 계획(Home Purchase Plans)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⁴¹⁾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방식에 의한 주택 금융에서 수요자들이 기존의 주택 금융에 비해 더 낮은 보호를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청은 이슬람 방식의 모기지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한 취급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⁴²⁾ 특히 이슬람 방식의 모기지 상품은 피해 변상의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슬람 방식의 모기지 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청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강화에 의해 이슬람 금융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시장 규모가 작은 이슬람 금융기관이 사업을 중단하여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규제의 균형을 취하고자 했다.

38) Michael Ainley 외, 앞의 책, p.14.

39) 디클라이닝 무샤라카 혹은 감축 동업은 미국의 이슬람 금융기관인 라리바 미국 금융하우스(LARIBA American Finance House: LARIBA)의 주택 관련 금융 서비스를 보면 알 수 있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은 자신의 자본을 LARIBA에 출자하여 주택을 매수한다. 주택을 매수한 후 LARIBA는 그 주택으로 임차료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때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 고객으로 하여금 그 주택의 명의를 이전받도록 하고 은행은 임차료를 지급받는다. 이 경우 무샤라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업 주체이자 주택을 이용하는 자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되어 임차료 지급의무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때문에 주택이용자의 지위에서 임차료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사업의 주체로서 있는 지분만큼은 차감되고 그 나머지만을 LARIBA에 지급하면 된다. 이에 더해 LARIBA의 지분을 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나눈 만큼의 액수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LARIBA의 지분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형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고객이 해당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서구 금융권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이자 없이 샤리아 원칙에 맞게 구현한 이슬람 금융상품이다.

<https://www.lariba.com/default.htm>(검색일2025.1.7.).

40) HM Treasury, 앞의 자료, pp.16-17.

41) UKTI, UK Excellence in Islamic Finance, 2014, p.13.

42) Michael Ainley 외, 앞의 책, p.21.

한편, 수쿠크는 금융감독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쿠크는 다양한 이슬람 금융 방식에 기반하여 자산 집합을 구성하고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다.⁴³⁾ 그러므로 수쿠크는 일반적인 채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쿠크의 정의상 이를 집합투자증권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산 근거부(asset based) 수쿠크는 채권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수쿠크가 집합투자 증권과 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 감사기구(AAOIFI)는 최소한 14개의 가능한 수쿠크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⁴⁴⁾ 그러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는 규제적 정의를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개별 수쿠크에 대해 경제적 성질을 규명하고 각각의 수쿠크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채권 구조에 가까운 수쿠크는 채권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집합투자증권에 가까운 수쿠크는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하게 취급하고자 한다. 영국 재무부와 금융감독청은 2008년에 수쿠크를 감독하기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수쿠크에 대한 금융감독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수쿠크를 대체투자수단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수쿠크 중에서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자산 근거부 수쿠크를 집합투자체계(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규제에서 제외시켜 수쿠크에 대한 금융규제를 채권에 대한 규제와 동등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⁴⁵⁾ 특히 이자라 수쿠크와 무라바하 수쿠크를 채권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무다라바 수쿠크를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입장을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 2000년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FSMA) 시행을 위한 2010년 명령[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Amendment) Order 2010]을 개정하여 수쿠크 중에서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자산 근거부 수쿠크를 집합투자체계 규제에서 제외시켜 수쿠크에 대한 금융규제를 채권에 대한 규제와 동등하게 처리하기도 하였다.⁴⁶⁾

(다) 조세 체계 정비

영국 정부는 크게 주택 금융, 대출 상품, 예금, 수쿠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 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을 단계적이고 지속적

43) 강대창, 앞의 논문, 63-74면.

44) 강대창, 앞의 논문, 75면.

45) HM Treasury, Government sterling sukuk issuance: a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2008, pp.13-17.

46)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0/86/contents/made>(검색일 2025.11.25.).

으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의 거래에 수반되는 실물 흐름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이슬람 금융상품의 투자수익을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조세 중립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조세 정책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즉 첫째, 조세는 거래의 경제적 내용을 따라야 하고, 둘째, 이슬람 금융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동등한 금융상품과 같은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가능한 한 통상적인 조세 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넷째, 바람직하지 않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 규칙은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사안별, 단계적으로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조세 쟁점이 발생했을 때 영국 정부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를 정비하였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영국 정부는 먼저 주택 금융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2003년 금융법은 이슬람 금융 방식의 모기지인 이자라 방식으로 부동산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발생하는 인지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2005년 금융법에서 디클라이닝 무사라카 방식의 모기지를 활용하는 개인에게도 적용하였고 2006년 금융법에서는 회사에도 이중과세 방지 조항을 적용하였다.⁴⁸⁾

또한 영국 정부는 대출 상품을 규정하고 투자수익을 이자로 취급하는 입법을 시행하였다. 2005년 금융법에서는 무라바하를 포괄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환매조건부 판매(repurchase and resale)로 부르면서 이를 대출로 처리하고 판매수익을 이자에 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예금 방식을 규정하고 투자수익을 이자로 규정하였다. 2005년 금융법은 규제적 목적으로 무다라바를 예금 방식으로 규정하고 무다라바의 투자 수익을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감면하였다. 또한 2006년 금융법은 와칼라(wakalah)⁴⁹⁾도 규정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감면하였다.⁵⁰⁾

47) HM Treasury, 앞의 자료(주 45), p.15.

48) HM Treasury, 앞의 자료(주 45), pp.16-17.

49) 와칼라는 대리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계약자는 사업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대리인 혹은 와킬(Wakil)이라고 불리는 상대방에게 위임한다. 해당 대리인은 정해진 수수료를 받으면서 와칼라 계약 내용을 운용하는데 수수료율은 계약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없으며 동 계약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전액 와칼라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Abdul Rahim Abdul Wahab · Mervyn K. Lewis · M. Kabir Hassan, "Islamic takaful: Business models, Shariah concerns, and proposed solutions".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49 Issue3, 2007, p.381.

나아가 영국 정부는 수쿠크를 규정하고 투자수익을 이자로 처리하였다. 2007년 금융법은 영국에서 수쿠크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수쿠크를 대체 금융투자 채권로서 채무 수단으로 처리하며 수쿠크의 투자 수익을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과 동등하게 처리하였다. 이 조치는 수쿠크 발행을 활성화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로 여겨졌다. 그러나 발행자의 관점에서는 수쿠크 발행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008년 금융법은 수쿠크 발행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에 대한 토지인지세와 인지세 원천세(stamp duty reserve tax)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추가 입법을 통해 대안적 금융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영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유연성을 가지는 입법 태도를 가졌다.⁵¹⁾ 따라서 2009년 금융법은 수쿠크 방식의 각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확대하는 입법을 통하여 토지인지세의 이중과세를 막고자 하였다.⁵²⁾

그 외에도 2007년에 영국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모든 금융기법에 대한 조세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자본 충당,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등에 대한 과세 규정을 담고 있다.⁵³⁾

(라) 표준화

이슬람 금융의 특성상 영국 정부가 표준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았다. 예컨대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샤리아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두지 않고 있다. 영국의 정부기관은 종교적 규제기관이 아니며, 엄격한 규제에 의해 이슬람 금융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⁵⁴⁾ 이런 입장에서 영국 정부는 샤리아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발생하는 이슬람 금융의 위험을 이슬람 금융시장이 해결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특정 샤리아위원회의 샤리아 해석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이슬람 금융기관이 샤리아 적격성 주장의 근거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감독한다.⁵⁵⁾ 이와 함께 영국의 기존 전통적 금융에 적용된

50) HM Treasury, 앞의 자료(주 45), pp.16-17.

51) 강대창 외, 앞의 책, 51면.

52) HM Treasury, 앞의 자료(주 45), pp.16-17.

53) UKTI, 앞의 책, 13면.

54) HM Treasury, 앞의 자료(주 45). p.19.

55) HM Treasury, 앞의 자료(주 45). pp.19-20.

관행을 최소한의 개정을 통해 이슬람 금융에 적용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표준화를 추구하였다.

영국 정부는 또한 국제 이슬람 금융기구들의 기준을 활용하여 표준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공통된 샤리아 기준을 발전시키는 국제기구인 이슬람 금융감독위원회(IFSB)와 AAOIFI의 샤리아 기준을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FSA는 이들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샤리아 기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슬람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기준을 발전시키고자 한다.⁵⁶⁾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1)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

일본에서는 200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 3월 일본 외무성은 당시 고노 외무대신의 제안으로 이슬람 연구회를 결성하였다. 이 연구회는 이슬람 문화, 경제, 외교, 정치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연간 총 7회의 연구회 모임을 개최하고, 이를 요약·정리한 보고서를 2000년 12월에 발표하였다.⁵⁷⁾ 이 보고서는 '21세기 일본과 이슬람 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이 일본 국내에서 이슬람 전반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슬람 국가와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연구를 확충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는 꾸란에 근거한 이자(리바) 수취 금지 조항에 대한 역사와 현황, 이슬람 은행의 구조를 소개하고, 이슬람 금융의 성장세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재무성은 2006년 재무성 산하에 이슬람 금융연구회를 설치하였다. 이 연구회는 외무성의 이슬람 연구회를 계승하여 이슬람 금융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 3월에 발간된 보고서⁵⁸⁾에 따르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중동 오일머니의 영향력 증대, 영국·싱가포르 등 비이슬람 국가의 적극적인 이슬람 금융 도입 현황과 요인 등을 설명하

56) Michael Ainley 외, 앞의 책, p.13.

57) https://www.mofa.go.jp/mofaj/area/islam/islam_12.pdf(검색일2025.11.20.).

58) <https://www.waseda.jp/inst/ias/assets/uploads/2016/09/16ab37a6b8dbc62a4ecf00a289c3ae69.pdf>(검색일2025.11.20.).

고, 일본 정부와 민간 관계자가 이슬람 금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현재 재무성 이슬람 금융연구회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슬람 금융이 활성화된 국가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본 금융계는 2005년을 전후하여 이슬람 금융을 견인하는 중심국인 말레이시아와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금융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슬람 금융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이후에 언론 매체에서 이슬람 금융에 관한 보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이슬람 금융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중동 오일달러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며, 이슬람 금융에 대한 협조유자를 추진하였다. JBIC는 2006년에 사우디 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이슬람 지역의 샤리아 학자 4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샤리아 적격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슬람 금융연구회를 운영하였다. 샤리아 학자의 자문은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아 2009년까지 지속되었으나,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2007년에는 이슬람 금융서비스위원회(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IFSB)와 공동으로 이슬람 금융 세미나를 개최하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이슬람 금융에 대한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2007년 1월 도쿄에서 JBIC, IFSB, 해외투자정보재단(Japan Institute for Overseas Investment: JOI)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기반 구축과 법제 정비, 규제 감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⁵⁹⁾ 이와 더불어 일본의 IFSB 가입 현황은 일본 기관이 국내외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은 현재 IFSB의 정회원(Full Member)이 아니며, 옵저버(Observer) 지위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이 IFSB 옵저버로 가입한 시기는 200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며, 주로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과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⁶⁰⁾

일본 정부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59) https://asianbondsonline.adb.org/documents/abmg/abmf_jpn_bmg2016-chp8.pdf(검색일2025.11.25.).

60) <https://www.ifs.org/membership/>(검색일2025.11.25.).

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는 법률을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서 일본 정부는 은행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⁶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은행 계열사가 이슬람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은행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2항을 개정하여 은행의 자회사 및 형제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 영역('금융 관련 업무')에 관한 정의를 확대하였다. 신설 조문인 은행법 제17조의 3 제2항 제2호의 2에는 "금전대출 이외의 거래에 관한 업무에 있어 금전대출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종교상 규율로 인한 제약에 의해 이자 수령이 금지되어 있고, 해당 거래가 금전대출 이외의 거래임을 종교상 규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구성된 회의체의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에 한한다.)" 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즉 이슬람 금융 중에서 무라바하와 이자라를 '금전대출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금융 관련 업무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은행은 자회사 및 형제회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슬람 금융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은행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은행을 제외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회사는 이슬람 주식 펀드를 판매하였고, 보험회사는 타카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해 실물거래를 수반해야 하는 이슬람 금융을 취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일본의 은행들의 업무 영역을 확대시켜 이들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은행 모회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은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 외에는 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은행의 모회사가 이슬람 금융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이슬람 금융 현황

1) 개설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은 크게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현황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일본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현지에서 활발하게 이슬람

61) <https://elaws.e-gov.go.jp/>(검색일2025.11.25.).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금융이 발달한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은행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반면 일본 금융기관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 12월 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일본 국내은행의 자회사가 이슬람 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이슬람 금융사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을 금전대출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⁶²⁾ 이에 따라 일본은행 자회사는 무라바하, 이자라와 같은 이슬람 금융상품을 금전대출과 동일시하여 은행 업무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일본의 개정규칙에 의하면 무다라바 및 무사라카가 허용된 이슬람 금융상품인지 여부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체에 관한 부분도 불분명하다.⁶³⁾ 또한 일본이 최근 이슬람 금융도입을 위한 일련의 법제도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샤리아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⁶⁴⁾ 그 밖에도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일본의 우호적 조치로는 2009년 3월 중동 국부펀드가 일본의 국내나 예금 등에 투자하여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⁶⁵⁾

한편, 일본의 3대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미츠비시도쿄UFJ은행(MUFG bank), 미즈호은행(Mizuho Bank)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본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의 일부를 취급할 수 있게 되자, 일본의 대형 은행은 일본 국내에서 이슬람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가 정비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2008년에 영국 현지법인 '유럽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 '이슬람파이낸스그룹'을 설치하는 등 런던을 거점으로 삼아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은 2008년 12월에 자회사인 말레이시아미츠비시도쿄UFJ은행 내에 이슬람 금융 전문부문을 설립하여 투자은행업무 등을 포함한 도매금융업을 전개하였으며, 미즈호은행은 2011년 9월에 말레이시아 현지법

62) 안수현, "최근 일본의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와 국내 시사점", 충남대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2, 191면; 김정렬, "한국과 일본의 이슬람금융 도입에 관한 비교 연구", 大韓經營學會誌 24-2, 대한경영학회, 2011, 1234면.

63) 안수현, 앞의 논문, 191-192면.

64) 안수현, 앞의 논문, 217-218면.

65) 김정렬, 앞의 논문, 1234면.

인 영업을 개시하였다.

2) 수쿠크 발행

일본 기업은 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에서 수쿠크를 발행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수쿠크를 활발히 발행하여 수쿠크가 채권 발행 전체(일반채권과 수쿠크) 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금융기관은 현지의 수요를 활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수쿠크를 발행하였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동 오일머니 유치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이슬람 금융 시장 진출을 목표로 이슬람 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 수쿠크 시장 형성에는 실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일본 기업 중 성공적인 수쿠크 발행 사례로 2010년 9월 도요타 파이낸셜 서비스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한 5억 링깃 규모의 수쿠크이었다. 이 수쿠크는 5년 만기 발행 및 와칼라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실제로 이 수쿠크는 발행 규모의 2배 이상인 10억 링깃 이상의 청약을 기록하며 높은 시장 관심을 확인했다. 이 수쿠크가 성공한 것은 일본 국내가 아닌 세계 최대 수쿠크 시장인 말레이시아를 선택함으로써 성숙한 이슬람 금융 인프라와 풍부한 투자자 풀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도요타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신용도가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제공하였으며,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동남아시아 자동차 금융 시장 진출이라는 전략적 목적이 명확했다. 그러나 도요타는 2010년 이후 추가적인 수쿠크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일본 기업들도 수쿠크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⁶⁶⁾

그리고 일본 기업은 해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부로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는 일본 기업들이 GCC 국가에서 유전개발 등 대규모 합작 사업을 진행할 때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미토모 화학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7년에 스미토모 화학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와 합작프로젝트로 진행될 석유화학 및 정제 복합 단지인 페트로 라빅(Petro Rabigh)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 98억 달러 중 6억 달러를 이슬람 금융으로 적용하였다.⁶⁷⁾

66) Bedi Lackmann, "Types of Sukuk (Islamic Bonds) and History of Japanese Company Issuance", Nomura Journal of Capital Markets, Vol.6, No.3, 2015, pp.1-20, <https://www.nicmr.com/nicmr/english/report/repo/2015/2015win02.pdf>(검색일2025.11.20.).

67) <https://www.petrorabigh.com/en/AboutPRC/WhoWeAre/Pages/AboutUs.aspx>(검색일2025.11.20.).

3) 국내 이슬람 금융의 한계

일본 정부가 이슬람 금융 활용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업은 일본 국내 시장에서 이슬람 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요 부족과 신중한 승인 절차에 기인한다. 일본 정부는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와 형제회사를 설립하여 이슬람 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하였지만, 아직까지 일본 국내에서는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가 거의 없다. 법제 정비가 완료된 이후 일본의 은행은 원칙적으로는 일본 국내와 해외에서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은행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08년 전후로 일본의 은행은 말레이시아, 영국 등의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반면에 일본 국내에서는 3대 메가뱅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체제 정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일본 국내 은행이 이슬람 금융에 대비한 체제 정비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당장 이슬람 금융에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으며,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낮다. 또 다른 원인은 일본 정책당국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승인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이슬람 금융업을 승인할 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일본 내 수쿠크 발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일본 정부는 2011년에 세제를 개정하여 수쿠크의 발행 체계 정립, 세제 혜택 부여, 전문 투자자용 채권시장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⁶⁸⁾ 동 개정에서 일본판 수쿠크(J-Sukuk)로 활용 가능한 준채권형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을 일반 채권과 과세상 동일선상에 두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자산유동화법 개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이자라 구조의 수쿠크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수쿠크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체계는 자금조달자가 특수목적신탁을 통해 사채적 수익권을 이용하여 이슬람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이다.⁶⁹⁾ 그러므로 수쿠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번거로움, 계약 이행 시 긴 시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수쿠크는 기초자산에 대한 샤리아 적격성 심사 등 수쿠크 발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처리 관련 비용

68) https://www.fsa.go.jp/en/news/2012/20120416-1.html?utm_source=openai(검색일 2025.12.20.).

69) <https://www.fsa.go.jp/news/23/sonota/20120410-1/01.pdf>(검색일 2025.12.20.).

과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 채권을 발행할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수쿠크를 발행하여 자산을 증권화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샤리아 적격성 심사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약 1천만~2천만 엔 사이로 추정된다. 유로본드 등 기존의 채권을 발행할 때 소요되는 금액이 수백만 엔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수쿠크를 발행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4) 사무라이 본드와 그 한계

이처럼 이슬람 금융은 일본 내에서 각광받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전 아베신조 총리는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2013년 7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본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회사인 말레이시아 개발공사(Malaysia Development Berhad: 1MDB)와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은 사무라이 본드(Samurai Bond)⁷⁰⁾ 발행을 추진한다는 협정에 서명하였다.⁷¹⁾ 2012년 1MDB는 일본 시장에서 약 2,000억 엔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였다. 당시 환율로 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이 채권은 5년 만기로 설계되었고, 약 4%의 금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100% 출자한 정책금융기관인 JBIC는 1MDB의 사무라이 본드에 대해 신용보장을 제공하였다. 이는 당시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일본 국채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었으므로, 노무라증권 등 일본의 주요 증권사들이 주관사로 참여했고, 국제 투자은행들도 발행 과정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사무라이 본드가 2017년 만기를 맞이했을 때, 1MDB는 국제적 스캔들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고, 자체적으로 채권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신용도 유지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평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상환 책임을 떠안았다. 결국 원금과 이자는 정상적으로 상환되었지만,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일본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원금 손실은 피했지만, 이 사건은 사무

70) 사무라이 본드는 비(非)일본 발행자인 외국 발행체가 일본 국내에서 일본 엔화로 발행하는 채권(외국채)로서 일본의 공시 및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 채권을 말한다. https://en.wikipedia/wiki/Samurai_bond?utm_source=openai(검색일2025.12.20.).

71) https://theedgemalaysia.com/article/malaysias-samurai-bond-effective-cost-nearly-4-after-currency-swap-%E2%80%9494-guan-eng?utm_source=openai(검색일2025.12.20.)

라이 본드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 보증이나 높은 신용등급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후 투자 결정에서 더욱 신중해졌다.⁷²⁾ 2020년 대 들어 일본의 국내 수쿠크 발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수쿠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이슬람 금융 허브인 말레이시아를 가장 선호한다.

5) 샤리아 적격지수와 그 한계

이 밖에도 2007년 5월에는 일본 거래소 그룹(Japan Exchange Group)와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가 공동으로 개발한 S&P/TOPIX 샤리아 150 (S&P/TOPIX Shariah) 지수를 상장하였다.⁷³⁾ 샤리아 적격지수 상장 여부는 S&P에서 계약한 샤리아 자문 위원회를 통해 샤리아위원회에서 업종기준 심사와 재무기준 심사의 두 단계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절차는 업종기준에 대한 심사로서 돼지고기 관련, 술, 담배, 도박, 무기 및 방위산업, 포르노그래피, 전통적 서구 금융,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 금지업종으로 취급된다. 두 번째 절차는 재무기준 심사로서 레버리지 적합성, 현금 적합성, 샤리아 부적합 사업수익 여부, 투자자의 배당 정화비율(Purification ratio) 등을 검토한다. 이슬람 금융이 간접적으로 이용된 금융상품으로는 샤리아 적격주식이 일부 포함된 중동주식 펀드 등이 있다. S&P/TOPIX 샤리아 150지수는 연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재조정되며, 블룸버그(Bloomberg)를 통해 실시간 지수값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모 뮤추얼 펀드 역시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상품이 없으며, 구조화 상품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지수는 일본에서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않는 지수, 혹은 잠자는 지수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개의 ETF 출시, 투자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이슬람 금융 허브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샤리아 금융 전문가 육성 그리고 실질적인 중동 오일머니 유치 노력이 필요로 한다.⁷⁴⁾

72) <https://www.afr.com/world/asia/goldman-in-focus-as-scandal-plagues-malaysias-1mdb-and-najib-razak-20150722-gihv14>(검색일2025.12.21.).

73) https://www.spglobal.com/spdji/jp/indices/equity/sp-topix-150-shariah/?utm_source=openai#overview(검색일2025.12.21.).

74) IFSB, Islamic Finance for Asia; Development, Prospects, and Inclusive Growth, 2015., https://www.ifsb.org/wp-content/uploads/2023/10/Islamic-Finance-for-Asia-Development-Prospects-and-Inclusive-Growth_En.pdf(검색

IV. 결 론

이슬람 금융은 소위 서구식 금융에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샤리아의 원칙을 수용한 금융으로서 국제 금융위기 이후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과도한 레버리지, 불투명한 파생상품, 부채 중심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서구 금융시스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반면, 이슬람 금융은 과도한 부채투기와 불투명한 구조화 상품을 제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국제금융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 특히 비이슬람국가는 자국의 금융권 내로 이슬람 금융상품을 도입시키거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의 국내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시킨 적이 있었다. 물론 동 개정안은 일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으로 개정되지 못했지만, 이슬람 금융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절감하고 있다. 특히 비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수용·이용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이슬람 금융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 법령 개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영국은 현재 서구권에서 가장 발달한 이슬람 금융 허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영국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을 소수 종교공동체를 위한 특수 금융으로 보지 않고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와 금융서비스 다양화의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슬람 금융이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이어야 하기에 이자(riba) 금지, 과도한 불확실성(gharar) 금지 및 실물자산 기반 거래 등은 기존 영국의 금융·세제 제도와 충돌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세법·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등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이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 태도로 개정하였다. 즉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금융을 대체 금융투자 방식이라고 부르고, 수쿠크를 대체 금융투자 채권이라고 부른다. 또한 영국의 이슬람 은행들은 영국에서 영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도매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영국의 이슬람 투자은행들은 해외 이슬람 금융상품 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영국의 이슬람 은행은 영국 국내에서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소매금융 분야에서는 주로 주택금융을 위한 모기지과 저축예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도매금융 분야에서는 투자은행

일2025.11.20).

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이슬람 금융을 필요할 때 활용하는 국제 자금조달 및 투자 연결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영국은 이슬람 금융을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키워서 주택금융 등 소매금융에서부터 수쿠크 시장 등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까지 폭넓게 구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일본은 영국처럼 자국내 무슬림 대중 금융을 중심으로 시작했는지 보다는 중동·말레이시아 등과의 투자 및 자금조달에 염두해서 이슬람 금융에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2008년 12월 은행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일본 국내은행의 자회사가 이슬람 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이슬람 금융 사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을 금전 대출과 동일시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 자회사는 무라바하, 이자라와 같은 이슬람 금융상품을 금전대출과 동일시하여 은행 업무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일본의 개정규칙에 의하면 무다라바 및 무사라카가 허용된 이슬람 금융상품인지 여부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체에 관한 부분도 불분명하다. 이처럼 일본 국내의 이슬람 금융의 사용저조는 단순히 무슬림 인구 부족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소극적 개정과 정부의 까다로운 이슬람 금융상품의 인·허가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국외 이슬람 금융 활용 역시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즉 일본 금융기관이 중동 및 동남아 무슬림 투자자와의 거래, 인프라·부동산·항공기 리스등 실물자산 기반 금융에서 이슬람 금융기법을 활용하거나 펀드·특수목적기구 등을 통해 이슬람권 자금이 일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과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슬람 자본의 중요성과 이슬람 금융의 국제적 경향을 간파하고 자국의 국내 법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국내 입법을 통해 이슬람 금융상품이 활용될 수 있게 한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영국과 일본의 법제도와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따른 국내 법제도를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대창,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2-02, 2012,
- 강대창 · 손성현 · 서영경,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김정렬, “한국과 일본의 이슬람금융 도입에 관한 비교 연구”, 大韓經營學會誌 24-2, 대한경영학회, 2011.
- 브라이언 케텔(김두윤, 김민경 역), 꼭 알아야 할 이슬람 금융, 해남, 2014.
- 안수현, “최근 일본의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와 국내 시사점”, 충남대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2.
- 최재건 · 서희열, “이슬람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2011. 9.

외국문헌

- Abdul Rahim Abdul Wahab · Mervyn K. Lewis · M. Kabir Hassan, “Islamic takaful: Business models, Shariah concerns, and proposed solutions”.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49 Issue3, 2007.
- A.L.M. Adbul Gafoor, Interest-free commercial banking, A.S. Noordeen, 2010,
- Bedi Lackmann, “Types of Sukuk (Islamic Bonds) and History of Japanese Company Issuance”, Nomura Journal of Capital Markets, Vol.6, No.3, 2015.
- Bilal Khan, “The Value of Islamic Banking in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Review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 29, 2010,
- Brian Kettell, Islamic Banking and Finance Workbook: Step-by-Step Exercises to Help You Master the Fundamentals of Islamic Banking and Finance, John Wiley & Sons, 2011.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reatment of Islamic financial instru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C.18/2006/9,

- Fatima Akaddaf,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o Arab Islamic Countries: Is the CISG Compatible with Islamic Law Principles?", 13 Pace Int'l L. Rev. 1 (2001).
- Ghiath Shabsigh et al.,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in Countries with Islamic Banking, IMF Country Report No. 17/145, 2017.1.5.
- Gohar Bilal, "Islamic Finance: Alternative to the Western Model",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23 No.1, 1999.
- HM Treasury, The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in the UK: the Government's perspective, 2008.
- HM Treasury, Government sterling sukuk issuance: a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2008.
- Hussain G. Rammal, "Mudaraba in Islamic finance: principles and application", Feature Edition. Vol. 2013 Issue 2, 2013,
- Jamshed Y. Uppal, "Risk and Return of Mudarabas: Empirical Evidence from Pakistan",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41 no.4/5, 1999.
- M. Kutlughan Sava Okte, "Fundamentals of Islamic Economy and Finance: Theory and Practice", Electronic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9 no. 31, 2010.
- Michael Ainley · Ali Mashayekhi · Robert Hicks · Arshadur Rahman · Ali Ravaliala, Islamic Finance in the UK: Regulation and Challenges,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7. 11.
- S. Farroq, "A Profile Analysis of the Customers of Islamic Banking in Khyber Pakhtunkhwa", IBA Business Review, vol. 6 No.1, 2011.
- UKTI, UK Excellence in Islamic Finance, 2014.

<국문초록>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Sharia) 원칙에 따라 이자(riba) 금지, 과도한 불확실성(gharar) 회피, 실물자산 기반 거래를 중시하는 금융으로,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서구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레버리지·불투명한 파생상품·부채 중심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대안적 국제금융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비이슬람 국가들도 해외 자본 유치와 금융서비스 다변화를 위해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 또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경 수쿠크(sukuk)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했으며, 그럼에도 중동 자본 연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 다변화 측면에서 제도 검토 필요성은 지속된다.

먼저 영국은 서구권에서 가장 발달한 이슬람 금융 허브 중 하나로 평가되며, 198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을 단순히 소수 종교공동체를 위한 특수금융으로 보지 않고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와 금융서비스 다양화의 관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다만 샤리아 적합 금융은 이자 금지, 실물자산 기반 거래 등으로 인해 기존 금융·세제 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있었는데, 영국 정부는 세법 및 부동산 거래 과세 등을 정비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이 제도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중립적 과세(tax neutrality)’ 기조를 취하였다. 또한 영국은 이슬람 금융을 ‘대체 금융투자 방식’, 수쿠크를 ‘대체 금융투자 채권’으로 공식 분류하는 등 제도적 수용을 명확히 하였고, 영국 내 이슬람 은행들은 국내에서 소매금융(주택금융, 예금 등)과 도매금융(투자은행 업무)을 병행하는 한편 중동·북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으로 영업 범위를 확장하며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슬람 금융을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보다 국제 자금조달·투자 연계 수단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2008년 12월 은행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본은행 자회사가 무라바하(murabaha), 이자라(ijarah) 등 일부 이슬람 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이익공유형(무다라바·무사라카) 구조의 허용 범위와 적합성 판단 절차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영국은 생태계를 폭넓게 구축한 적극 수용 모델, 일본은 국제거래 중심의 부분 도입 모델로 대비된다.

결국 영국과 일본은 비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적 확산과 이슬람 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법·제도적 수용을 추진해 왔다. 영국은 시장·산업 차원에서 제도와 생태계를 폭넓게 구축한 반면, 일본은 국제거래 중심의 부분적·선

별적 도입을 통해 실무적 통로를 마련해 왔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나라가 향후 이슬람 금융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 종교적·이념적 논쟁을 넘어서 조세·감독·인허가 체계의 정합성과 시장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 제도 설계를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샤리아, 이슬람법, 이슬람 금융, 비이슬람 국가, 영국 금융감독청, 일본 은행법
시행규칙, 수쿠크, 이슬람 은행, 타카풀, 이슬람 금융상품

<Abstract>

Islamic Finance Adoption and Current Status in Non-Islamic Countries

- Focusing o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

Sohn, Tae Woo

Islamic finance follows Sharia principles—prohibiting interest (riba), avoiding excessive uncertainty (gharar), and favoring asset-backed transaction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posed weaknesses in Western finance (high leverage, opaque derivatives, debt-heavy structures), Islamic finance gaine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Non-Islamic countries have therefore explored Islamic products and regulatory reforms to attract foreign capital and broaden financial services. Korea attempted around 2011 to revise tax law to enable Sukuk issuance but failed to pass the legislation; however, interest persists due to links with Middle Eastern capital and the need to diversify corporate funding.

The United Kingdom is a proactive model: since the 1980s it has promoted Islamic finance to enhance financial competitiveness, adjusting tax and property-transaction rules to ensure tax neutrality so Islamic products are not disadvantaged. It formally classifies Islamic finance as “alternative finance,” and sukuk as “alternative finance investment bonds,” while Islamic banks offer both retail and wholesale services and expand internationally. Japan, in contrast, adopts a selective, international-transaction-focused approach. A December 2008 change to banking regulations allowed subsidiaries of Japanese banks to handle certain structures (e.g., Murabaha and Ijarah), but profit-and-loss sharing models (Mudaraba, Musharaka) and Sharia-compliance procedures remain legally unclear. Overall, the UK and Japan illustrate two different paths—broad ecosystem-building versus limited, deal-focused adoption—highlighting that any Korean approach should ensure consistency across taxation, supervision, and licensing.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도입과 현황

Keywords : Sharia, Islamic law, Islamic finance, Non-Islamic Country, U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Enforcement Regulation of Japan's Banking Act, Sukuk, Islamic bank, Takaful, Islamic financial products

